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강 선 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9
----------	--------

발의연월일: 2020년 2월 일

발 의 자: 강선영, 황영호, 김현희, 윤유선
김성한, 송순효, 신낙형, 김용원
이종숙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능기부 문화의 장려를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궁극적 목표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 각각의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및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적재적소에 재능기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재능기부 장려 및 지원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발전이라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조례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재능기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재능기부 유형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마.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사.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아.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18조

나. 협조부서: 협치분권과

다. 입법예고: 2020. 2. 예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재능기부를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과 관이 함께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 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재능기부의 유형)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